

消費者保護法의 改正에 부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7월 30일 민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梁承圭 교수(서울대 법대)의 발표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梁 承 圭

〈서울大 法大 教授〉

1. 머릿말

오늘의 경제사회는 大量生產, 大量消費로 이어져 消費者保護의 문제는 國家의 관심사로 되지 않을 수 없다. 憲法 第125條가 消費者保護運動의 保障을 國家의 責務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現行 消費者保護法은 1980년 1월 4일 法律第3257號로 公布되어 198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法律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어느 정도 物品의 生產에서流通過程에介入하여 事前豫防措置에 의한 消費者保護를 꾀하고 事業者에게 被害補償機構의 設置·運營을 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消費者保護法의 基本理念은 消費者에게 안전하고 適正價格의 物品이나 用役을 적절하게 購入할 權利를 保障하고 만일 購入한 物品 등에 의하여 被害를 입었을 때까지는 간편하고 신속한 救濟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消費者保護法의 理念에 비추어 볼 때에 現行法은 너무나 抽象的이고 宣言的이다.

이에 따라 現行法은 우리나라 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消費者保護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고 消費

者를 보호함은 물론 좋은 상품을 生產하여 적절한 條件으로 供給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도 消費者保護法의 근본적인 改正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論議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消費者保護法 改正試案은 그 동안의 批判을 수용하였고 消費者保護法의 基本理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대체로 그 改正方向은 잘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改正試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는 贊成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문제점

(1) 消費者의 權利와 義務

消費者保護法의 중심은 消費者의 權利保障에 있다. 消費者의 權利는 1962년 캐네디大統領에 의하여 제정된 이래 많은 주장이 있었고 改正試案 第 3 條*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

第 3 條(消費者의 基本的 權利) 消費者는 다음各號의 權利가 있다.

- ① 消費者는 모든 物品 및 用役으로부터 유발되는 生命·身體의 危害로부터 保護받을 權利가 있다.
- ② 消費者는 物品 및 用役을 購入함에 있어서去來의 相對方, 購入場所, 價格, 去來條件등을 自由로이 選擇할 權利가 있다.
- ③ 消費者는 物品 및 用役을 選擇함에 있어必要한 知識 및 情報를 提供받을 權利가 있

다. 그러나 이 條文을 總則에 두고 있어 하나의 理念을 선언하고 抽象的인 權利로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消費者의 權利와 義務는 獨립된 章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第3條 第2項과 第3項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消費者가 物品과 用役을 제대로 選擇하려면 먼저 그에 관한 知識과 情報를 提供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消費者의 權利를 전제로 할 때에 危害防止에 대한 간접적인 請求權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改正試案은 行政當局의 權限中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案 第6條 3項*은 「……必要한 경우에는……」라고 규정하여 主務長官의 裁量行為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必要한 경우 또는 消費者團體의 請求에 의하여」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韓國消費者保護院

消費者保護 施策을 추진하는 總括機構의 설치가 요망되어 왔다. 그 동안 經濟企劃院, 商工部, 工業振興廳 등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던 消費者保護 問題를 총괄할 수 있는 獨立機構를 設置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도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消費者保護機構를 法人으로 하는 것이

다.

④消費者는 그들의 消費生活에 影響을 주는 國家・地方自治團體의 政策과 事業者의 活動 등에 대하여 意見을 反映시킬 權利가 있다.

⑤消費者는 物品 또는 去來로 인하여 입은被害에 對하여迅速・公正한 節次에 의하여 適切한 補償을 받을 權利가 있다.

⑥消費者는 合理的인 消費生活을 營爲하기 위하여 必要한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⑦消費者는 스스로의 權益을 擁護하기 위하여 團體를組織하고 그를 通하여 活動할 權利가 있다.

第6條 ⑧主務長官은 그主管하는 物品 및 用役에 대한 第1項의 基準을 事業者가 遵守하는지 與否를 定期的으로 試驗・檢査 또는 調査하여야 하며, 消費者的 危害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事業者에게 破棄・收去 또는 禁止를 命할 수 있다.

옳으나, 아니면 行政機關으로서 經濟企劃院이나 또는 政府의 한廳으로 구성하느냐는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法人으로 할 때에는 關聯行政官廳과의 관계가 보다 명백하게 定立되어야 한다.

둘째, 法人으로 하는 경우 任員의 任免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에 委任하고 있으나 적어도 任員의 資格에 대한 制限規定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消費者保護를 추진하는 機關의理事는 각 分野의 專門의인 知識과 經驗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

消費者 被害를迅速하고公正하게 救濟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準司法機關인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를 둘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調停委員會 委員의 構成에 있어서 經濟企劃院長官의 提請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어도 非常任委員은 第33條 第2項 1號에서 5號*의 資格있는 사람을 각 명1씩으로 하도록 하여 多樣한 人的構成이 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經濟企劃院長官, 消費者團體, 法曹 및 事業者團體 등의 추천을 받는 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第33條(構成) ①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包含한 委員 7人으로構成하며, 2人은 常任으로, 5人은 非常任으로 한다.

②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中에서 經濟企劃院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任命 또는委嘱한다.

1. 3級以上의 公務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者로서 消費者保護業務에 實務 經驗이 있는者

2. 判事・檢査 또는 辯護士의 職에 10年以上의 經歷이 있는者

3. 大學이나 公認된 研究機關에서 副教授以上 또는 이에相當하는 職에 있거나 있었던者로서 大統領이 定하는 分野를 專攻한者

4. 消費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者로서 當該分野에 10年以上의 經歷이 있는者

5. 企業 또는 公認된 事業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者로서 當該分野에 10年以上의 經歷이 있는者

그리고 이 紛爭調停委員會는 다른 法律(가령 保險業法 第182條에 의한 保險紛爭調停機關)에 의하여 설치된 機構에서 消費者紛爭을 다루고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委員會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除外規定을 둘 필요가 있다.

(4) 被害救濟

消費者의 被害救濟는 迅速하고 公正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第35條 第1項*에서 消費者的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입은 損害에 대하여는 救濟請求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담거나 事業者가 消費者的請求가 惡意임을 證明하여 擔保提供을 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不當한請求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同條 第2項*에 國家, 地方自治團體 및 消費者團體 이외에 事業者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法案 第2條 第1項*은 事業者를 物品의 製造, 加工, 輸入, 販賣 또는 用役을 제공하는 者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령 食品의 流通過程에서 流通業者가 有效期間의 表示를 变경한 경우와 같이 製造業者나 加工業者에게 責任이 없는 경우 또는 輸入物品으로 인한 消費者的被害救濟에 대하여는 特別規定을 두는 것이 요망된다고 본다.

* 第35條(被害救濟의 請求) ①消費者は 物品 및 用役의 購買와 關聯하여 發生하는 被害의 救濟를 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消費者の 被害救濟請求를 接受한 國家, 地方自治團體 및 消費者團體는 院에 그 處理를 依頼할 수 있다.

*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事業者”라 함은 物品을 製造(加工 및 包裝을 包含한다), 輸入,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3. 맷는 말

오늘날처럼 복잡한 社會構造 속에서 消費者保護를 效果的으로 이룩하기 위하여는 危害防止 등 違法行為를 事前에 예방하여야 할 뿐 아니라 被害者的 救濟도 신속하고公正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消費者保護法 改正案은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 法의 운영에 있어서 注意하여야 할 것은 消費者保護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만이 消費者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美國의 예에서 보면 生產者的責任을 엄격하게 하여 消費者保護를 강조한 나머지 事業者의 破產 또는 事業場의 廢鎖의 원인이 되었고 또 事業者는 그 비용을 物品의 原價에 導入하여 오히려 선량한 消費者的 회생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렇게 비추어 볼 때 消費者保護法은 消費者나 事業者의 보호를 균형있게 調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事業者는 消費者를 보호하는 것이 진전한 事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消費者는 事業者의 원활한 발전에 의해서 그 權益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消費者保護法은 아울러 事業者保護法의 구실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消費者保護法에 의하여 消費者的 보호를 꾀하고 있다 하더라도 事業者의賠償資源의 確保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그리하여 事業者를 위한 賠償資源의 確保策도 아울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